

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20장 대학자체평가 제78조 (자체평가의 실시) ①총장은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교의 교육·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본 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 ③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④총장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제79조 (평가기구 구성) ①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. 1.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. 2.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7.1.> ②총장은 자체평가의 계획, 실시, 보고서작성,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. 1.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. 2.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7.1.> ③총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팀을 둔다. 1. 평가팀은 행정직원 1명, 팀장 1명을 둔다. 2.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7.1.> 제80조 (평가결과 공시) 총장은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	제 20장 삭제 제 78조 삭제 제 79조 삭제 제 80조 삭제 “별도로 자체평가 규정 새롭게 신설”
	제81조 (부속기관)①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. 22. 교양교육원 <23. 5. 1> 23. 인권센터 <23. 6. 1>
	부칙 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월일부터 시행한다.